

---

# 한국산 종자 『 K-seed 』 상표 관리 지침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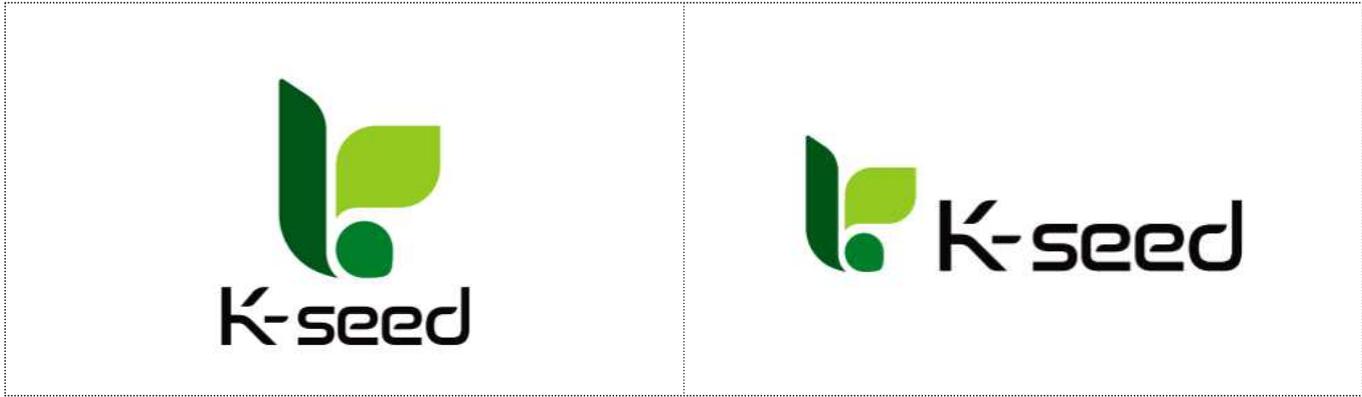
2023. 9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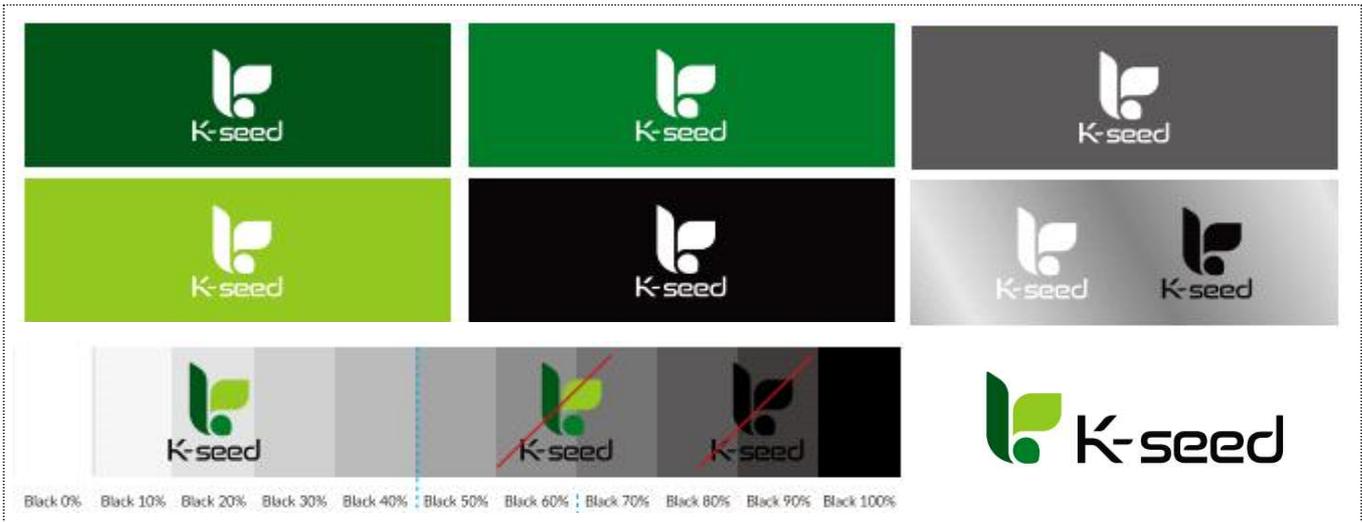
국립종자원  
종자산업지원과

# 1. 『K-Seed』 상표의 의미 및 사용규정

- 심벌마크는 korea의 K를 형상화하여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하였으며, 전체적인 형태는 한국의 우수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합니다.



- 『 K-seed 』 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시킨 정식 표기입니다. 적용 시 왜곡, 변형,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의 방지를 위해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**Minimum Size:** K-seed 심벌마크의 넓이가 가로 10mm, 로고타입은 넓이가 가로 16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사용금지 규정:** K-seed를 대표하므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**배경색상:** 상표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 Full Color로고는 Black 40 이하의 명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60이하의 명도에서는 **Black**, 70이상의 명도에서는 **White** 사용)
- **폰트:** 영문 본문용 서체는 'Roboto' 국문폰트는 '노토산스(Noto Sans KR)' 서체 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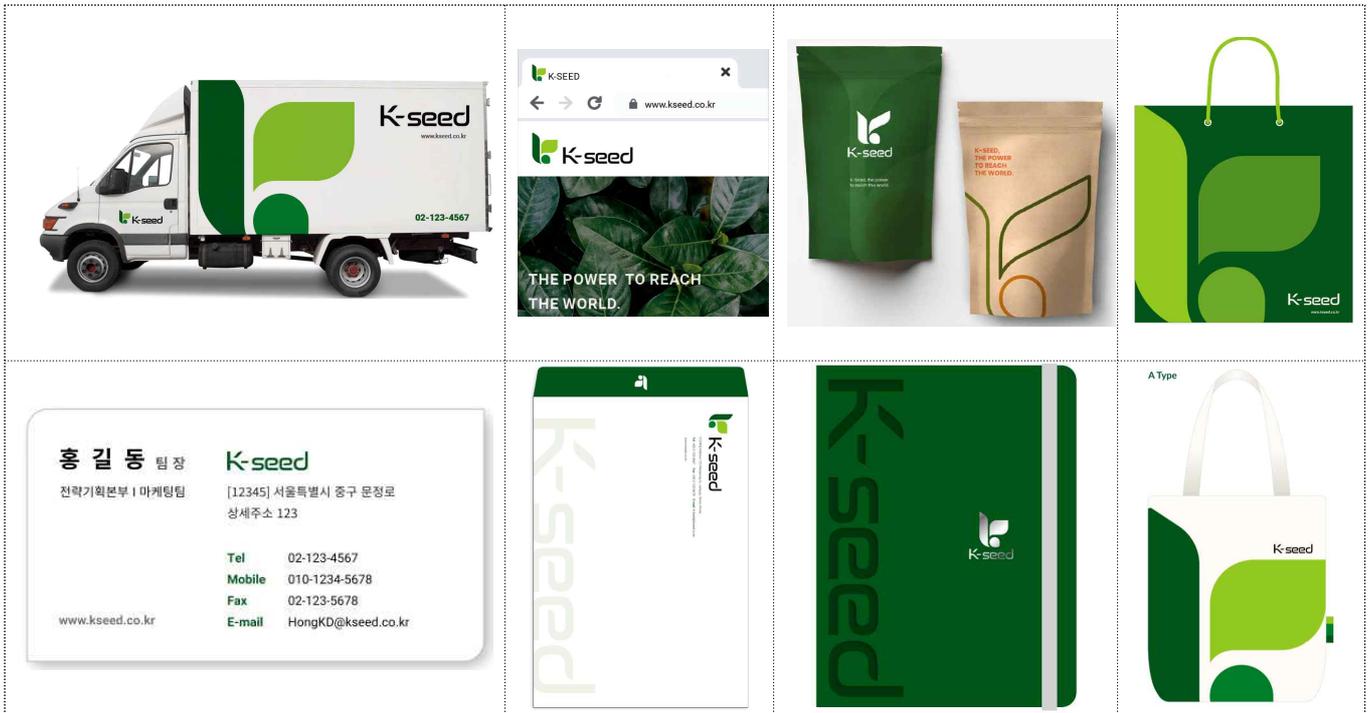
## 2. 『K-Seed』 상표의 필요성

- 한국산 종자의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해외에서 “한국산”임을 쉽게 구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

※ 본 상표는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가 아니므로 품질 관련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그로 인한 법률 분쟁 비용 및 법률적 책임을 상표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
## 3. 상표 활용예시

- 명함, 봉투, 쇼핑백, 파비콘, 운송수단, 각종 홍보물품 등



## 4. 사용국가(2023.8월 기준)

- 국내 및 주요 수출국 “3개국(미국·중국·인도)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국가	 국내	   미국      중국      인도
유형	제31류(종자 등), 제35류(수출입 등), 제42류(씨앗생산연구업 등), 제44류(씨앗파종업 등), 업무표장(종자원 고유업무)	제31류(종자 등), 제35류(수출입 등)

※ 대상국가는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

## 5. 사용자격

-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생산, 판매하는 종자업체, 생산자 등 및 산·학·관·연  
관련자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용도, 사용범위, 적용품목, 사용국가 등을  
명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승인 이후 자율적으로  
활용이 가능합니다.
- 상표의 사용자는 사용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## 6. 적용대상 및 사용범위

- (적용대상) 국내육성 품종으로 품종보호출원, 품종보호등록, 국가목록등재품종,  
수출전용품종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 
※ 단, 수출전용품종의 경우 수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필요
- (사용범위) 포장디자인, 각종 홍보물품, 웹사이트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.
- (사용용도) 기본적으로 한국산 수출용 종자에 부착이 가능하나, 대내외적으로  
한국산 종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종자에도 사용 가능합니다.

## 7.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

- 서류심사 및 사용승인은 월 1회 실시하며, 사용기준 충족 시 사용승인서  
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최초 승인시 3년의 사용기간 부여, 만료 전 갱신 가능합니다.
- 적용품목, 사용목적 등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 
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 지침위반 기준

### 1. 목적

- 한국산 종자의 신뢰성을 일관된 이미지로 전달하고, 프리미엄 종자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위반 기준을 제정하여 내실화 제고

### 2. 지침위반 기준

- ‘종자산업법’ 및 ‘식물신품종보호법’ 위반 품종
  - \* ex) 유통종자 품질표시사항 위반, 미보증 등
- 적용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신청·승인되지 않은 작물(품종)
  - \* ex) 생산·수입판매신고 품종, 해외육성 품종 등
- 침해 및 분쟁조정 진행 중인 품종
- 승인되지 않은 LMO(Living Modified Organisms)품종 및 미승인 LMO가 검출되어 판매 중지된 품종
-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상표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
- 상표 도용 등으로 ‘상표법’을 위반한 경우
- 기타 『K-Seed』 상표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3. 제재사항

- 기관의 상표 사용권 회수